

오·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1. 개정이유

발기부전 치료제인 ‘아바나필’ 함유제제가 시판될 경우 성기능 강화제 등으로 오·남용될 우려가 있어 동 제제를 오·남용우려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발기부전치료제인 “아바나필 함유제제”를 오·남용우려의약품으로 추가지정(안 제2조제15호)
- 나.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2012. 8. 24.에서 2014.10.10.으로 연장(안 제3조)

3. 기타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약사법」 제47조 및 「약사법 시행규칙」 제62조제1항제14호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 타 : (1) 신·구조문 대비표 별첨
(2) 행정예고('11.8.25 ~ 9.14) 결과 특이 사항 없음
(3) 규제심사 :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

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 -61호

「약사법」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「오·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-160호, 2009.10.16.)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.

2011년 10월 11일

식품의약품안전청장

오·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오·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5. 아바나필 함유제제

제3조 중 “2012년 8월 24일”을 “2014년 10월 10일”로 한다.

부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